

고 시

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2023-43호

별정우체국법 제3조의2,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한 별정우체국 지정의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경인지방우정청장

☐ 별정우체국 지정 취소

○ 지정취소 내역

별정우체국	관할우체국	피지정인	별정우체국 위치	지정취소 사유
포천신북우체국	포천우체국	이승우	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포천로 2152	피지정인의 자격요건 상실

○ 지정 취소일자 : 2023. 12. 31.